

90 (第16回-第6次)

<p>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</p> <p>1. 기금운용관: 보건복지국장 2. 분임기금운용관: 노인복지과장, 장애인복지과장, 청소년과장 3. 기금출납원: 분임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사무관</p> <p>②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.</p> <p>제13조(기금운용계획 등)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 1 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 2 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,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,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.</p> <p>제 3 조(노인복지기금등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기금·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 및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·채무 기타의 권리·의무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.</p> <p>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·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 및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설치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98년 12월 문교보사위원회</p>	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1998년 12월 8일, 서울특별시장 나. 회부일자: 1998년 12월 10일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- 제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7차 문교보사위원회(98.12.23) 상정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원안가결</p> <p>2. 제안설명요지(문화관광국장 김우석) 우리 시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·육성하고,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려는 것임.</p> <p>3. 주요골자</p> <p>가. 위원회의 기능: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 자문(안 제2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·단기 시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(2)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(3)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객 맞이 준비에 관한 사항 (4)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<p>나. 위원회의 구성: 위원장을 위원의 과반으로 구성(안 제3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위원: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 ○위원장 및 부위원장: 위원 중에서 호선 <p>○위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계공무원 - 기타 관광에 관하여 경험과 의견이 풍부한 자 <p>(2) 간사: 문화관광국 관광과장</p> <p>다. 위원의 임기: 2년 연임가능(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)</p> <p>4. 참고사항</p> <p>가. 관련법령: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(자문기관의 설치)</p> <p>나. 예산조치: '99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(400만 원)</p> <p>다. 합의: 필요 없음.</p> <p>5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윤병국)</p>
---	--

<p>□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임.</p> <p>○ 먼저 제1조는 시의 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 육성하고,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,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열거하고 있음.</p> <p>○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은 관계공무원, 관광관련기관·단체 및 업체관계자, 기타 관광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, 위원의 임기는 관계공무원의 경우 해당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였음.</p> <p>그러나 위원 구성(참고자료)에서 보듯이 문화관광부의 관광기획과장은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위촉 대상이라는 점이 문제로 남게 됨. 왜냐하면 문화관광부의 관광기획과장은 위원으로 두는 것은 국가의 관광정책과 시의 관광정책간 연계성 및 보완성을 염두에 둔 경우라 할 것인바, 위촉직이라는 이유로 임기 2년을 고수하게 되면 현재의 관광기획과장이 문화관광부의 타 보직으로 변경되더라도 위원직을 유지하게 되어 중앙정부와 관광정책의 연계성 내지 보완성 확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.</p> <p>○ 따라서 문화관광부의 관광기획과장은 위촉직임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전반부의 규정을 근거로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위원의 임기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</p> <p>○ 제5조는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,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토록 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제7조는 수당에 관한 규정을, 그리고 제8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.</p> <p>○ 마지막으로 부칙 제2항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는바, 이는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.</p> <p>6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.</p> <p>7. 심사결과</p> <p>원안가결(재적 16인, 재석 16인, 전원일치)</p> <p>8. 소수의견 요지: 없음.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.</p>	<p>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안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·육성하고,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설치 및 기능)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,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용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·단기 시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2.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.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객 맞이 준비에 관한 사항 4.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<p>제 3 조(구성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을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계공무원 2. 관광관련기관, 단체 및 업체 관계 인사 3. 기타 관광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<p>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문화관광국 관광과장이 된다.</p>
---	---